
외국의 표준어 정책

한재영 ·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 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 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2006년 5월 접수 된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2008년 11월 13일의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의 일부이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준어 규정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의사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청구인들은 특히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로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바, 국가의 공식적인 표준어를 정함에 있어 언어 사용의 인구수가 많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표준어로 하는 것에 비하여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

요지를 수용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표준어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국어 현실은 표준어에 관한 논의의 종결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현행 표준어 규정이 표준어가 아닌 표준 어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표준어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세계화·국제화의 큰 흐름 속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국어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어 정책에 대한 검토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개별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표준어와 표준어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셈이다.

현행 표준어 정책이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흘러 표준어 규정과 언어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현행 표준어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게 된 이유가 된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방편으로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세계화와 국제화를 겪었던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나라와, 다양한 언어 사용 집단의 존재로 표준어 또는 공용어의 필요성을 경험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현황을 살피는 작업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찾아 가기 위한 기초가 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표준어 또는 공용어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그 나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이제 각국의 표준어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표준어 정책과의 차이에도 관심을 가지기로 한다.

2. 각국의 표준어 정책 현황¹⁾

2.1. 일본

일본의 표준어는 17세기에 정치의 중심지가 교토로부터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로 옮겨지면서 언어의 중심지도 점점 교토, 오사카 등 관서 지방으로부터 에도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에도 시대 후기에는 에도의 상층 계급이 쓰는 말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공통어의 지위를 잡았다고 한다(사나다 2001: 70).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서 에도는 도쿄로 이름이 바뀌면서 명실 공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근대화와 함께 언어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떠올랐다.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표기법의 통일과 문체의 통일, 그리고 언어적인 지역 차의 극복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 특히 문체의 통일에 관해서는 문학자, 학자가 중심이 되어 벌여졌던 소위 ‘언문일치 운동(言文一致運動)’이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구어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표준어 성립에 큰 몫을 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0년에 ‘제국교육회’ 안에 결성된 ‘언문일치회’는 언문일치에 관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정부가 1902년에 ‘국어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으며 국정 교과서에 구어체를 채용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1) 이 글의 주된 내용은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 의해 진행된 사업인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02년에 문부성 안에 국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세운 조사 방침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조사하여 표준어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다.²⁾ 그 후 ‘도쿄어[東京語]가 표준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어조사위원회가 1916년에 간행한 《口語法》으로, 예언(例言)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主トシテ今日東京ニ於テ專ラ教育アル人々ノ間ニ行ハルル口語ヲ標準トシテ案定シ、其ノ他ノ地方ニ於ケル口語ノ法則トイヘドモ廣ク用セラルルモノハ、或程度マデ之を斟酌シタリ。

(주로 오늘날 동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는 구어를 표준으로 규정하여, 다른 지방에 있어서의 구어의 법칙도 널리 사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였다.)

표준어라는 단어 자체는 1890년에 오카쿠라 유자부로(岡倉由三郎)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가 1895년에 잡지 《제국문학》에 ‘표준어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서양의 표준어 발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어도 표준어가 발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도쿄어가 표준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것은 동경 토박이말이 아닌 교육을 받은 동경인이 하는 말이며, 당장 표준어가 될 수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될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표준어의 규정이 완성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전국으로 보급되는 데는 1904년부터 사용된 최초의 국정 교과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과 1925년에 시작된 라디오 방송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대까지 활발했던 표준어와 관련된 논의는 점차 사라지고, 표준어라는 용어 대신 ‘공통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많아지게 된다. 일본

2) 사나다(2001: 89)에 따르면, 이때 ‘표준어’라는 용어가 공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한다.

에서의 표준어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통어’와의 용어 차이다. 특히 표준어라는 용어 기피 현상은 일부 언어학자 사이에서 현저히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일본의 국가주의,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표준어의 개념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또 표준어로 인하여 소외받는 지역 방언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어’ 대신 ‘공통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문헌은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 보고서 《언어생활의 실태》(1951)로서 거기서는 ‘전국 공통어’의 약칭으로 ‘공통어’를 썼는데, 점점 이 용어가 표준어 대신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메이지 시대 이후 1950년대 전반까지 남아 있던, 표준어를 정하려는 노력을 계승하려는 이가 없어지고, 도쿄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던 언어를 공통어라고 불러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일본의 표준어는 언문일치 운동 같은 민간단체 및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국어조사위원회 및 국어심의회가 발족되었으나 표준어를 새로 규정하거나 정의하려는 노력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52년부터 2년간 국어심의회 내에 설치된 표준어부회(標準語部會)가 작성한 《표준어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표준어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공통어[東京語]에서 옳지 못한 발음이나 용어, 어법을 제거한 것으로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은 언어는 사회적 습관이며 역사적 변화를 면하지 못하므로 결국 사회 양식의 최대 다수가 사용하고, 지장 없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부회의 이 보고서는 외부 발표 없이 실패로 끝이 났다.

국어심의회는 1934년 설립되어 2001년 폐지될 때까지 60여 년에 걸쳐 일본 언어 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중에서도 각각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자를 제한하고, 가나 철자법을 표음식 철자법으로 바꾸도록 한 1946년의 결정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는 국어심의회의 뒤를 이어 문화청 내에 설치된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文化審議會 國語分科會)’가 국어 정책 결정을 맡고 있다.

2.2. 중국

현재 중국의 공용어는 보통화(普通話)³⁾이다. 한어(漢語)는 한족(漢族)의 언어로서 긴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누어졌는데, 방언은 크게 한족의 북방 방언(北方方言), 오방언(吳方言), 상방언(湘方言), 공방언(贛方言), 객가 방언(客家方言), 민방언(閩方言), 오방언(奧方言)과 같이 7대 방언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방언의 차이는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언어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통화이다. 따라서 방언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보통화의 교육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요시되는 실정이다.

중국의 표준어 작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시작되었다. 1954년 12월에 국무원 직속으로 중국문자개혁위원회(中國文字改革委員會)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한자 및 중국어 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중국어 개혁 작업은 ‘한자의 간략화(簡化), 보통화의 보급, 한어 병음 방안(漢語拼音方案)의 제정 및 보급’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30여 년간 이 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85년 12월 16일에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약칭 國家語委)로 기구 명칭을 바꾸었다.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⁴⁾는 중

3) 1955년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은 현대 중국어 규범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한민족(漢民族) 공용어를 보통화라 부르기로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회의 후 여러 분야의 논의를 거쳐 공용어의 3가지 기준 즉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 어휘로 하며, 전형적인 현대 백화(白話)로 쓰인 저작의 문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4)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는 1998년에 교육부로 합병되었다.

국의 언어 문자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언어 문자 사업의 방침, 정책 초안 및 언어 문자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물론, 중국어와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규범 및 기준을 제정·감독하며, 보통화 보급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통용 언어 문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도모하고, 여러 민족과 지역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언어 사용 현황 및 언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중국 정부는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인 보통화와 규범 한자의 보급 의무를 진다. 단, 각 민족은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 되, 언어 문자 사용은 헌법, 민족 자치법에 따른다. 국가 기관, 교육 기관, 출판물, 언론 매체, 서비스업 등은 보통화와 규범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맞춤법이나 발음은 한어 병음(漢語拼音)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1984년에 설립된 언어문자응용연구소는 언어 문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언어 문자의 정보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지방의 언어 문자는 각 지방에 소속된 언어 문자 관련 기관들이 담당한다.

1950년대부터 중국은 대대적인 보통화 보급 방침⁵⁾을 정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법규를 제정하여 보통화 보급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민족 자치 지역에 속해 있는 각 민족의 간부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되, 보통화와 규범 한자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울러 보통화 보급을 위한 평가 등급과 평가 방법도 마련되어 있는데 우선 표준어 평가 기준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을 갑, 을의 두 등급으로 하여 총 6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5) 1950년대부터 중국은 '大力提倡, 重點推行, 逐步普及(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점차 보급한다)'라는 보통화 보급 방침을 정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교사, 대학 졸업자, 발음 교육에 종사하는 방송, 신문사와 같은 언론 매체 종사자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등급을 소지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넓은 지역의 많은 인구를 하나의 국가 사회로 묶어 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3. 미국

미국은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 영어의 개념이 암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1997년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p. 10)에 따르면 191개 나라 중 공식어가 없는 8개 나라(미국, 영국,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영어는 초기에는 여러 다른 언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식어로서의 위치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영어의 공식어로서의 위상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영어를 공식어로 선포하자는 움직임 또한 강해지고 있다. 미국 헌법은 공식어(official language)를 명백하게 적시하지 않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계속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공용어 명시 법안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모두 폐기되었으나 이런 움직임은 약해지지 않고 있으며 주 차원에서는 성공한 경우가 많다. 1812년 루이지애나(Louisiana) 주, 1920년 네브래스카(Nebraska) 주가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1990년까지 28개의 공용어 지정 명령이 있었고 이 중 23개가 1980~199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미국 영어의 표준화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와 기관들-교사, 미디어, 그 외 기관들-이 바로 표준화 담당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겠다. 그 밖에 문법책,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의 권위가 인정된 출처에 의해서도 언어 규

범이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영어인지 아닌지 알고자 할 때 이런 권위 있는 안내서를 참고한다. 이렇게 권위 있는 문법서,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이 표준 영어의 규범으로 활용되는 미국에서 사전 편찬은 특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전 편찬에 있어서는 코퍼스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코퍼스 장르, 코퍼스에 포함될 구어나 문어의 화자 및 필자의 교육 수준, 방언의 변이 문제 등이 코퍼스 수집 판단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미국의 교육 과정은 주마다 다르게 설계되며 학교 교육은 이에 의거해 실시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표준 영어 교육 제시 방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뉴욕 주 유치원 전 시기부터 12학년까지의 영어 과목에 대한 일반적 언어 학습 표준(Language Standards)에서는 각 학년에 해당되는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표준 영어 관례, 언어 지식, 어휘 습득과 활용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또 언어의 발전적 기술이라는 표를 통해 다양한 표준들이 학년별로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영어 과목을 위한 일반 핵심 내용 표준에서도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표준 영어 관례, 언어 지식, 어휘 습득과 활용이 뉴욕 주와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 두 주의 영어 교육 과정에서 표준 영어 관례(慣例) 부분은 문법과 활용법, 대문자 사용, 문장 부호 사용과 철자에 걸쳐 표준 영어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미국 표준 영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 과정에 따라 표준 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외국어, 방언, 사회 방언을 제외시킨다. 즉 교육 과정은 문법책, 영어 활용서, 사전과 함께 표준 영어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4. 프랑스

프랑스의 헌법 제2조에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일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리바롤의 ‘프랑스어의 보편성에 대한 연설’에서 유

럽의 다른 국가보다 프랑스어가 우수함을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어에 대한 프랑스인의 자부심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영어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각종 분야에 약 200개의 새로운 영어 낱말이 침투하고, 영어 혼용 상태가 되자, 프랑스 정부는 1965년 ‘프랑스어 순화 및 전파 위원회’를 설립하여 영어 추방 운동을 벌이는 등 프랑스어 보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어 사용을 감독하고, 유럽 연합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La Francophonie)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프랑스어와 언어적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은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구로서, 프랑스어의 정서법과 표준어 제정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학술원은 사전에 없는 단어라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시켜 끊임없이 언어 용법을 기록하되, 저속어나 신어, 전문어를 제외한 공식적 프랑스 어휘만을 기술하려고 노력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를 비롯하여 재화나 용역, 공공 업무 등에서 프랑스어가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나 학회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프랑스에는 국정 교과서 없이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집필에 대한 지침에 따라 교육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프랑스어 교육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랑스어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다지고, 모국어를 완전히 익혀 용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프랑스어가 총 수업 시간의 약 34.6%를 차지한다. 학교는 ‘바른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을 임무로 하며 ‘프랑스어의 수호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⁶⁾

6)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 신뢰하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 학교가 59%, 프랑스 국민이 29%, 프랑스 학술원과 미디어가 각각 15%를 차지했다.

프랑스 언어 정책의 법적 규정은 과도한 국가 개입 주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언어 사용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색시켜 수동적 존재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방언 및 소수 언어에 대한 관련 법규의 부재, 성인 이민자를 언어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프랑스의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중 언어 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5. 스페인

스페인어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 19개 국가의 공식어이다. 스페인어는 스페인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방언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의 스페인어 역시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발음과 어휘와 문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어 표준어를 특정 지역의 것으로 한정할 경우, 그 밖의 지방이나 여타 국가의 스페인어 화자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탓인지 현재 스페인어 표준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스페인어의 지역별, 국가별 다양성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어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을 중심으로 스페인어권 21개국의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들 한림원에서는 특정 지역의 스페인어를 표준어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모두 인정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각국의 한림원에서 보고하는 새로운 어휘를 심사 위원회를 거쳐 사전에 등재시키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스페인어 사전(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은 2001년에 제22

판이 발간된 이후, 현재 제23판이 스페인 한림원 창시 300주년 기념을 위하여 출판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각국의 한림원 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동 작업을 통하여, 스페인어 문법(Gramática), 철자법(Ortografía)과 같은 간행물도 주기적으로 개정 출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신규 문법서(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는 2009년에 발간되었으며, 개정된 스페인어 철자법(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도 2010년에 발간되어 전 스페인어권 교육 기관에서 이들을 스페인어 교육의 기본 지침서로 삼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스페인어권 각국의 한림원 연합회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스페인어는 그 지역적, 국가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러 언어로 분열되지 않고 동일한 문법 체계 하에 언어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과 스페인 언어권 국가는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으며, 신규 사전, 신규 문법서, 신규 철자법 등과 같이 대중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어문 관련 업적물이 나올 경우, 인터넷 누리집(<http://www.rae.es>)과 공교육 제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므로 일반인들은 새로운 어문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스페인어의 표준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스페인 왕립 한림원의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여 ‘Consultas lingüísticas’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는 스페인어 사전 질문란(Consulte el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이 있어 언제든지 궁금한 단어를 적어 넣으면 RAE(Real Academia Española, 스페인 왕립 한림원)의 최신 버전 사전에 의한 정의와 해당 어휘가 나오는 문장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나온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표준 스페인어의 홍보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전 스페인어권 국가의 화자들에게 통합되고

단일화된 스페인어의 길로 안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스페인어권 국가들이 스페인 왕립 한림원을 중심으로 21개국의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가 일치단결하여 누리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2.6.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 당시 인도네시아어 사용 인구가 자바어 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여 자바어를 국어로 추진하자는 운동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 언론, 출판, 미디어 활동 및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어가 민족 언어로서 지위를 확립, 사용 인구도 점차 늘려갈 수 있었다.⁷⁾ 그리하여 1926년 개최된 청년학회에서 국가 공용어인 ‘믈라유(Melayu)어’를 ‘인도네시아어’로 명명할 것을 발표하였고,⁸⁾ 1928년 10월 27일 개최된 제2차 청년학회에서는 믈라유어가 공식 인도네시아어로 결정되었다. 그 후 1945년 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령 제35조에 의거 공식 언어로 확정되었다. 인도네시아어는 공식 언어로서 교육, 국가 차원의 의사소통, 공식 서류 작성 및 인문, 기술, 예술 및 대중 매체에서 활용 수단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가 국가 공식어로 지정된 후에도 지방어의 세력은 쇠약해지지 않았는데, 자바 지방의 경우 학교 수업은 인도네시아어로 이루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청년의 맹세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 남녀는 인도네시아라는 단 하나의 조국을 가짐을 확인한다.
-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 남녀는 인도네시아 민족이라는 단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한다.
-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 남녀는 인도네시아어라는 통일 언어를 사용한다.

8) 네덜란드 식민지 이전 인도네시아어의 근원이 되었던 믈라유어가 이미 전역으로 확산되어 무역 및 상거래에서 사용되었는데, M. Tabrani에 의해 1926년 5월 2일이 ‘인도네시아어의 날’로 제정되었고, 공용어의 명칭으로 ‘믈라유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주장되었다.

어지더라도 학생들 간에는 자바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현재도 공통어 외에 자바어, 순다어, 마두라어, 미낭카바우어 등 수백여 개의 지방어가 병존하여 가정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6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철자법의 경우 독립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지정한 라틴 문자 철자법이 사용되었으나 1966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교육, 문화부의 기존 철자법에 대한 현대화 노력으로, 1972년 8월 1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한국의 표준어 정책과의 비교

3.1. 한국과 일본

일본은 표준어 성립 및 언어 정책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적 유사한 경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중류층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17세기에 정치의 중심지가 교토에서 에도로 옮겨지면서 언어의 중심지도 관서 지방에서 에도로 바뀌었고, 에도 시대 후기에는 에도의 상류층이 쓰는 말이 전국 통용의 공통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에도의 명칭이 도쿄로 바뀌고 동시에 도쿄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도쿄어를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되었다. 일본 국어조사위원회가 1916년 간행한 《口語法》 예언(例言)에 의하면 “오늘날 동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는 구어를 표준어를 규정하여(중략)”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어 규정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는 1904년 최초의 국정 교과서와 1925년 시작된 라디오 방송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표준어 규정과 보급은 민간이나 각

중 단체 및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그나마 많았던 표준어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에 들어 표준어를 정하려는 노력을 계승하려는 이가 없어지고, 도쿄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던 언어를 공통어라고 불러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3.2. 한국과 중국

대대적인 보통화 보급 방침을 정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중국은,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법규를 제정하여 보통화 보급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민족 자치 지역에 속해 있는 각 민족의 간부들의 경우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되, 보통화와 규범 한자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울러 보통화 보급을 위한 평가 등급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교사라든가 대학 졸업생, 발음 교육에 종사하는 방송이나, 신문사와 같은 언론 매체 종사자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등급을 소지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넓은 지역의 많은 인구를 하나의 국가 사회로 묶어 내기 위하여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표준어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각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언어적인 결속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3. 한국과 미국

미국의 공용어 논쟁은 미국 역사의 초창기보다 이민이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된 현재의 미국에서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용어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공용어 결정에 대한 법안은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논쟁은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논쟁이 그 주를 이루고 있고 어

휘적인 측면보다는 발음의 문제가 더 유효적인 논쟁거리로 대두된다는 면에서 볼 때 미국의 표준어 논쟁은 우리의 경우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 준다. 미국의 암묵적 표준어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언어로 간주되지만 어휘 사용에 있어서 상이함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발음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제시된다. 어휘 부분은 학자들의 기술에 기반한(description based)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방언 어휘들을 심의를 거쳐 표준어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표준어 규정을 기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미국은 언중의 동의(consensus)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도 교육 과정, 권위 있는 문법서,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이 암묵적 규범의 역할을 하면서 영어의 표준(standard)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표준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지역 방언보다 사회 방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인종, 계층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방언을 은연중에 하위 언어로 낙인찍음으로써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부정적 방언 정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방언 인식은 우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표준어 작동 방식을 참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미국에서의 공용어 논쟁, 방언과 표준 영어에 대한 인식 등은 우리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4. 한국과 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헌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과도한 국가 개입 주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개입 주의는 자국어의 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어의 해외 보급 및 파급 효과를 위해서도 요구될 수

있다. 영어의 국내외적 영향력 확대로부터 자국어의 위상을 지켜 넘과 동시에 유럽 연합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를 통해 아직도 남아 있는 프랑스어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이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법적 규정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언어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언어 사용자인 국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색시키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이 없을 경우 해결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프랑스 내에 있는 지역어 또는 소수 언어 활성화 기구 및 단체는 관련 법규가 없어 고충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언어적 상황은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다문화 사회의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즉 성인 이민자들을 언어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프랑스 당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해외 영토에는 프랑스어 외에도 수많은 토착 소수 언어가 존재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랑스어의 진흥으로만 특성화시키기보다는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중 언어 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의 처리 결과는 계속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3.5. 한국과 스페인

스페인어 어문 정책은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 추구'라고 집약할 수 있다. 중남미와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스페인어 어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어라는 언어의 골격이 되는 문법을 통일시키고 있다. 이렇게 스페인어라는 문법 골격은 하나로 유지되기 때문

에 스페인어권 화자들은 별 문제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존재하는 발음의 차이, 어휘의 상이한 사용법 등이 있겠다. 그러나 한림원에서는 이들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국가의 스페인어 사용법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매년 한림원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중남미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RAE 사전에 등재시켜 새로운 사전이 편찬될 때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한림원의 정책은 표준어와 방언으로 이분화시켜 표준어 위주로 언어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인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4. 나가며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1988년 1월 19일 공포되었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의 '표준어 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검토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시행된 이후의 시간 변화에 의한 국어의 변화와 국어의 사용 환경이 변한 데에 기인한다. 아울러 표준어에 대한 언중들의 의식 변화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계층의 다양화 등이 그간의 표준어 정책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였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언어가 혼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 정책을 살펴본 작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의 창코나베, 중국의 북경 오리 구이, 미국의 잠발라야, 프랑스의 에스카르고, 스페인의 파에야,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렝은 우리가 지금까지 둘러본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들이다. 각각의 재료가 다르고 그에 따라 맛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식사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재료를 대하고, 요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음식 문화 발전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살핀 결과는 보다 구체적인 답을 구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와 같은 형식의 표준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선 우리와 같은 방식의 표준어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준어 정책을 추구하던 일본조차도 공용어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미국이나 스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에 관한 명시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에 관한 정책은 각기 형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의 교육과 보급 방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작업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각 국가에서 언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택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당면한 과제를 풀어 가기 위한 답은 물론 표준어 정책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의 표준어 정책과 각국의 정책 비교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표준어 정책이 우리의 그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각국의 언어 사용 환경과 배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도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국어학회 편(1993),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 김인숙(2000), 《미국 영어(American English)》, 한국문화사.
- 김진수(2000),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31집.
- 김진수(2000),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대하여, 《프랑스 어문 교육》 제9집.
- 김진수(200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프랑스 어문 교육》 제11집.
- 김현권(2003),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 노무라 도시오[野村敏夫](2006), 《國語政策の戦後史(국어 정책의 전후사)》, 東京: 大衆館書店.
- 문화청(文化廳)(2005), 《國語施策百年史》.
- 사나다 신지[眞田信治](2001), 《標準語の成立事情(표준어의 성립 사정)》, PHP文庫, PHP研究所.
- 송기형(1998), 인터넷을 통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연구,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25집.
- 송기형(1999), 프랑스의 언어 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27집.
- 송기형(2000),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역사 비평》 통권 52호.
- 송기형(2001), 불어 총괄식 연구,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31집.
- 심을식(2002), 프랑스의 언어 정책,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38집.
- 안동환(2002), 《코퍼스 영어학》, 한국문화사.
- 양오진(2003), 中國의 自國語 教育, 《語文研究》 제31권 제4호.
- 이우경(2000), 미국의 언어 정책과 영어, 《외국학 연구》 4.
- 장소원(1993), 프랑스의 언어 정책,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 한선혜(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새국어생활》 제12권 제2호.
- 현성준(2003), 中國 初·中·高等學校 語文教育 教育內容에 대하여, 《漢文教育研究》 제21호.
- 黃伯榮·廖序東(2011), 《現代漢語(增訂四版)》, 高等教育出版社.
- AIF(2004), *Le français dans le monde*, No 333, Paris: CLE International.
- Allieres, J.(1982), *La form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PUF.

- Calvet, L-J.(1974),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Paris: PUF.
- Caubet, D. et al.(2002), *Codification des langues de France*, Paris: L'Harmattan.
- Chafe, W. L., W. John, De Bois & S. A. Thompson(1991), Towards a new corpus of spoken American English, in Aijmer, K. & Altenberg, B.(eds.), *Corpus Linguistics*, NY: Longman Inc.
- Dauzat, A.(1949), *Le géni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Librairie Guénégaud.
- DGLFLF(2001), *Rapport au Parlement*,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Fennell, B. A.(2001), *A History of English*, MA: Blackwell Publishing.
- Finegan, E.(2009), English, in Comrie, B.(eds.), *The World's Major Languages*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Giusti, A.(1997), *La langue française*, Paris: Flammarion
- Jacquois, G.(1994),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de la France et le statut des langues en Belgique, Paris : RIE, N°3.
- Judge, A.(1994), La planification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 RIE, N°3.
- Kretzschmar, JR., W. A.(2004), Regional Dialects, in English in the U.S.A (eds.).
- Kridalaksana, Harimurti(2009), *Masa-Masa Awal Bahasa Indonesia*, Depok: Laboratorium Leksikologi dan Leksikografi, Universitas Indonesia.
- Kurath, H.(1949), *A Word Geography of the Eastern United Stat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bov, W., Ash, S. & C. Boberg(2006), *The Atlas of North American English: Phonetics, Phonology and Sound Change*,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 Metcalf, A.(2000), *how we talk: American regional English today*, Bost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 Millward, C. M.(1996), *A Biography of the English Language*(2nd edition), Wadsworth, a division of Thompson Learning, Inc.
- Schildkraut, D. J.(2005), *Press 'one' for English*,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d, C. L.(2001), *The Politics and Cultural Plur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er, H.(1998), *Le français dans tous les sens*, Paris: Robert Laffont.
- Wiley, T. G.(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unction of Language Ideologies in the United States, in Ricento, T.(Ed.), *Ideology, Politics and Language Politic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Wolfram, W. & N. Schilling-Estes(1998), *American English*, Blackwell Publishers.
- Wolfram, W.(2004), Social varieties of American English, in English in the U.S.A.(eds.), 58~75.